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위원회
2024년 6월 (전체위원회)
(速記録)

- 주관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 일시 : 2024. 6. 18.(화) 14:00 ~ 14:41
- 장소 : 문화본부 4층 대회의실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10, 센터프라자 808호

Tel) 02-537-0889 Fax) 02-738-0123



서울특별시 무형유산위원회 2024년 6월(전체위원회)

◆ 일시 : 2024. 6. 18.(화) 14:00 ~ 14:41

◆ 장소 : 문화본부 4층 회의실

◆ 참석자 (14명)

참석자 : 무형유산위원회 위원 14인

배석자 : 000 과장, 000 팀장, 000 시의원, 000 주무관

◆ 심의사항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21호 서울잡가 보유자 인정 심의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39호 아쟁산조 전승교육사 인정 심의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22호 마들농요 명예보유자 인정 심의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3호 송파다리밟기 명예보유자 인정조사 여부 심의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11호 침선장 보유자 인정조사 여부 심의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15호 오죽장 보유자 인정조사 여부 심의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50호 관모장 보유자 인정조사 여부 심의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57호 백동장 보유자 인정조사 여부 심의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55호 불교지화장엄 보유자 인정조사 여부 심의

◆ 보고사항

- 기능종목 보유자 미응모 종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개회)

○ 000 위원장

우선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1. 청렴서약서 제출의무 안내.

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4/K061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2/22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은 심의·의결 시 미리 배부해 드린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신 위원께서는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의 제척회피 안내. 위원의 제척회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제9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당사자 등의 기피 안내. 기피 신청에 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제9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 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와 관련해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께서는 기피 신청할 위원이 있습니까?

○ 000 위원

제가 1번 서울잡가 인정 여부 심의의 000 신청자하고 학연이 있어서 제가 회피를 하는 게 옳겠습니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다른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 빠지시면 되겠습니다.

○ 000 위원

네.

○ 000 위원장

서울특별시 무형유산위원회 2024년 6월 전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 목차가 있고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차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 심의사항

□ <「서울잡가」 보유자 인정 심의>

○ 000 과장

예. 1페이지입니다. 안건번호 2024-02-001번입니다. 무형유산 제21호 「서울잡가」 보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 안건입니다.

추진경과를 보시면 2023년 6월 29일부터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는 다섯 분이 접수를 했고 그 이후에 인정조사 계획을 만들어서 평가기준도 다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휘모리잡가」 이수자 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심사위원단 회의를 통해 실기평가 기준을 마련하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올해 4월 19일에 최종적으로 기량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기량심사 조사는 아래의 조사결과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분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다섯 분이 신청하셨는데 한 분은 참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총점과 평균점수는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심의 요청드릴 내용은 그 심사결과를 참고해서 인정 대상자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예. 그런데 심사결과표를 여러 선생님들께서 보셨겠지만 대상자를 결정하는 점수가 기본이 있습니까? 'B+'이상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 000 과장

법적인 기준은 없는데 보통 보유자는 90점 이상, 전승교육사는 80점, 이수자는 70점 이 정도로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000 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대상자들 점수가 아주 미달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한 말씀씩 해 주세요. 음악을 하신 000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 000 위원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네. 점수가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데, 이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조사위원들이 다양하게, 실기하신 분도 있고 이론하신 분도 있고 또 경기민요만 해서는 너무 사제관계가 있을까 봐, 여기 보면 서도민요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해서 조사한 절차에 이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이 점수대로 규정상 받아들이고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000 위원장

평가하신 것들이 썩 그렇게 마음에 안 들게 평가를 하셔서요. 그러면 이 「서울잡가」 보유자 인정 여부 심의에 있어서는 점수가 워낙 좋지 않아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다음, 「아쟁산조」 전승교육사 인정 심의를 하겠습니다.

□ <「아쟁산조」 전승교육사 인정 심의>

○ 000 과장

22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39호인 「아쟁산조」 전승교육사 인정 심의 내용입니다.

추진경과를 보시면 저희가 인정 신청서를 접수했을 때 총 두 분이 접수했고 2024년 3월에 보유자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를 저희가 진행했고요. 그래서 아래 표에 보시면 신청자 두 분에 대한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참고하셔서 인정 대상자를 결정할지 여부를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이 아쟁산조는 무슨 류라고 하는 게 있죠?

○ 000 위원

네. 서울시에 지정되어 있는 박종선류가 해당되는 종목인데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은 박종선류 한 가지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러지만 여기 000하고 000 이분들이 아쟁산조의 박종선류인데, 제자들이
에요?

○ 000 위원

예.

○ 000 위원장

유파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 000 위원

상관없습니다.

○ 000 위원장

만약에 유파가 다르다고 하면 서로 상충될 것 같아서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셔요.

○ 000 위원

위원장님, 전승교육사는 문화재가 있고 그 밑에 전수생들을 교육하는 자
리여서,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때 전승교육사가 나올 때는
문화재 선생님이 생존해계셨어요. 병환 중이어서 전승교육사 지정이 시급
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박종선 선생님이 지난 3월에 작고하시는 바람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문화재 보유자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절차상 보유자가 안 계신 상태
에서 전승교육사를 지정하기도 하는가. 아니면 전승교육사가 안 계시면
다 이수자여서 어떤 교육체계는 무너지게 되거든요. 문화재가 계셔서 전
승교육사가 대리교육을 해서 전수·이수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데 문화재
선생님이 작고하셨으니까 전승교육사가 없으면 완전히 교육은 없어져 버
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승교육사를 지정해서 안정적인 교육이 이루어지
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할 수 없이 전승교육사 자리가 아닌 보유자
지정에 대한 공모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는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4/K061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6/22



○ 000 위원장

그게 걱정이예요.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000 위원

일단 전승교육사라고 명칭이 바뀌면서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고 조교가 아니라 전승교육사로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승교육사도 전승교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급한 것은 전승교육사를 인정하고 그 이후에 보유자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서 다시 절차를 밟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보유자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승교육사를 지정한 다음에 보유자를 지정하는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쟁산조 전승교육사 인정 심의로 두 사람이 올라왔는데 평균점수를 보니까 일단 합격점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보유자는 따로 심의를 해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점수는 차이가 있는데 점수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아니면 재공고를 해야 하는지 논의를 해주십시오.

○ 000 위원

000 선생은 아마 돌아가신 박종선 선생님의 따님인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기량도 조금 더 높고, 지금 2번으로 올라와 계신 분은 너무 젊고 박종선 선생님 것을 그 따님이 오랫동안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셔서 이 조사위원들이 점수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으로 하는 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 000 위원장

위원들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000은 92.98이고 000는 89.03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000은 별세하신 박종선 보유자의 따님이시라고요?



○ 000 위원

네.

○ 000 위원

우선 000 신청자는 20대 후반으로 나이가 너무 지나치게 젊어서요.

○ 000 위원장

그러면 대상자를 000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인정 대상자는 000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22호 「마들농요」 명예보유자 인정 심의에 관한 건을 설명해 주세요.

□ <「마들농요」 명예보유자 인정 심의>

○ 000 과장

예. 세 번째 안건입니다. 마들농요 명예보유자 관련한 내용이고요.

전승교육사 분이 신청하신 건데, 000이라는 분입니다. 전승활동을 보시면 1996년부터 보유자 분을 만나서 전수를 받으셨고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인정 요청을 한 분이 1943년생이라 고령으로 전승활동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에 심의 요청사항은 조사결과를 보시면서 명예보유자로 인정할지 여부를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여기 보니까 우리 위원 분들 중에 000, 000, 000 위원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000 위원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

네. 이 자리에 있는 저희 조사위원 세 명이 다 같이 봤는데요. 전승교육사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4/K061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8/22



로서 활동기간이 2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고 또 전승교육사 본인이 물러나시겠다고 해서 명예보유자로 가고 다른 신청자를 전승교육사로 해달라는 말씀을 보유자, 전승교육사 두 분께서 아주 똑같은 목소리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충분히 하셨고 기존의 마들농요 보유자께서도 이제는 조금 물러날 때가 됐고 충분히 할 일을 다 했다고 말씀하셔서 셋 다 비슷한 의견으로 작성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마들농요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면 신청자 000 님을 마들농요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쪽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3호 「송파다리밟기」 명예보유자 인정조사 여부 심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송파다리밟기」 명예보유자 인정조사 여부 심의>

○ 000 과장

네 번째 안건입니다. 송파다리밟기 명예보유자 인정조사 여부 심의입니다. 신청자는 000 님이고 1942년생입니다.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것은 2008년부터 해서 전승교육사 활동기간이 16년 2개월입니다. 전승활동은 아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예보유자로 인정을 요청하신 이유는 신병이 악화된 부분이 있었고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실 내용은 신청서가 있고 제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명예보유자로 인정할지 조사여부를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야 하는 거죠?



○ 000 과장

예. 결정을 해주시면 조사 이후에 다시 안건으로 올리게 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송파다리밟기 명예보유자 인정하는 조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안건인데요. 이분은 연세가 많으십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봤는데요. 명예보유자 조사를 해봐야겠죠?

(“예.”하는 위원 다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명예보유자 인정조사를 하는데 조사위원을 여기서 뽑아야 하죠?

○ 000 과장

예.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한 가지 따질 게 있는 게 관례적으로 국가유산청에서는 전승교육사 활동기간이 20년이 안 넘으면 제동 거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올해 「위도띠뽀놀이」 전승교육사가 20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건강 때문에 규율을 바꾼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분의 ‘16년 2개월’ 얘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20년 이 되지 않더라도 보존회 상황에 맞춰서 조사를 한다.’라는 전제를 하고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그 전제를 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5년으로 낮추느냐 아니면 형편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느냐 하는 문제죠. 그런데 연수를 제한하는 것보다 위원회에서 형편을 고려해서 신병이라든가 고령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 000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러 시·도에서 이런 안건이 들어오거든요. 전부 다 미루고 있어요. 서울시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다른 시·도가 따라 바꿀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굳이 연도에 구매받지 않고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면,

○ 000 위원장

그렇죠. 형편에 따라서 전승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부가 안 되고 신병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인정을 해야죠.

○ 000 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16년 2개월 전승교육사인데 이분의 내용을 보면 2003년부터 실질적으로는 악사 전수활동을 담당했다는 근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000 위원장

뇌경색이면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 나가실 분들을 여기서 세 분만 추천해 주세요.

○ 000 위원

제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세 사람이 조사 나가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11호 「침선장」 보유자 인정조사 여부를 심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세요.

□ <「침선장」 보유자 인정조사 여부 심의>

○ 000 과장

침선장 보유자 인정조사 여부입니다.
경과를 한 번 보시면 1996년도에 보유자 박광훈 님께서 지정이 되었는데



2017년도에 명예보유자로 전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한 번 공모를 했는데 세 명이 접수를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적격자 없으므로 나왔고 2021년도에도 공모해서 다섯 분이 접수를 했는데 그때도 적격자가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공모를 진행했고 신청자는 총 다섯 분입니다. 아래 보시면 신청자 다섯 분의 내용이 있고 참고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분은 2018년도와 2021년도에도 접수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 요청사항은 신청서를 참고하셔서 인정조사 여부를 결정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사를 하겠다고 결정해 주시면 조사위원을 추천해 주시는 게 오늘 심의 사항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침선장은 우리 위원회에 이미 여러 번 올라왔는데요.

○ 000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네 분 중에 세 분은 두 번을 하셨다가 두 번 다 안 되셨고 한 분은 한 번 하셨다가 안 되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이번에 새로 신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하셨던 작품에 대한 심사를 1차로 하고, 2차 현장조사를 하면서 작품 조사를 하고 3차는 과제를 주어서 그 과제를 하루나 이틀 사이에 완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과제는 유물을 조사해서 그 유물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을 과제로 뒀습니다. 그런데 여기 침선장을 신청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30~40년 하셔서 작품을 보면 작품활동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하셨고 바느질 솜씨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제로 드렸던 것은 제일 간단한 삼회장저고리를 기본으로 하는데 재봉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바느질로 그 시간 안에 이틀이면 이틀 동안 완성하는 것으로 과제를 진행했는데 두 번 다 완성을 못 하셨고 저희가 완성을 못했을 경우에는 과정품을 봤습니다. 그래서 깃이 달려있는 모양이라든지, 삼회장을 제대로 달았는지. 또 처음에 본을 뜰 때 유물에 있는 대로 패턴을 제대로 잘 떼는지 바느질법은 전통 바느질법대로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수가 다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됐더라도 중간 과정을 제대로 했으면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동안 두 번 다 이분들이 패턴을 뜨다가 재단을 실수를 하셨다는



지. 바느질을 전통바느질로 안 하신다든지. 또 유물을 그대로 재현을 못 하신다든지. 깃을 앉혔는데 깃 모양이 제대로 안 나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줄 수가 없어서 두 번 다 못 뽑았는데 사실은 두 번째 때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모여서 조금 난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 분이라도 해드리려고 계속 점수를 맞춰봤는데 도저히 점수가 안 돼서 못 드렸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라서 사실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되게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되게 해드린다는 게 그분들이 최대한 기량을 원 없이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심사의 과정 중에 요즘에 지방에서도 보유자를 뽑을 때 하루나 이틀 사이에 전체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에 중간중간 과정품을 만들어서 연결, 연결하는 방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제를 주고 중간 과정품을 3단계로 나누어서 과정품을 중간에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시간 안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완성품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과제 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일단 보유자 인정조사는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작품을 두 번 본 것 같아요. 그때마다 봤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위원 지금 공예 분야에서 최 위원하고,

○ 000 위원

위원장님,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두 번을 해서 적격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똑같은 분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그분들이 뭔가 달라졌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심사 방법을 바꿔서 이번에는 세 번째는 꼭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새로운 분들이라면 제가 동의하지만 두 번씩 했다가 안 된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있는가.

○ 000 위원장

새로운 분이 끼어 있나요?



○ 000 위원

예. 한 분은 새로 들어온 분입니다. 그런데 과제를 만약에 똑같이 준다고 하면 시간을 조금 더 늘리거나 해서 어쨌든 완성품을,

○ 000 위원

저는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마치 시험 보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 000 위원장

그런데 지금 문화재는 지정을 해야 하니까요.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거니까 그러면 이것을 폐지한다, 없앤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 000 위원

그렇다고 해서 두 번 떨어진 사람이 변화가 없는데도,

○ 000 위원장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떨어진 것은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 000 위원

유물의 난이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은 난이도가 아주 높은 것이었고 두 번째 것은 상중하로 봤을 때는 유물의 난이도가 있기는 한데 첫 번째 것보다는 조금 낮지만, 아무튼 조금 고민되기는 합니다.

○ 000 위원장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사를 해야겠어요, 아니면 아예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 000 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정조사 여부거든요. 그다음 단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정조사 여부만 결정해주시죠.

○ 000 위원장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그러면 일단 인정조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인데요. 지금 000 위원님께서 인정조사를 하지 말자고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 000 위원

저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두 번 떨어진 사람을 왜 하나 이거죠.

○ 000 주무관

세 번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세 번 떨어지면 안 됩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조사는 하는 것으로 하고요. 조사위원 세 분께서 수고를 하셔야 하는데 우선 000 위원님은 조사한 이력이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 000 주무관

죄송한데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마치고 000 위원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또 몇 분 모여서 위원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56쪽,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15호 「오죽장」 보유자 인정조사 여부를 심의하겠습니다.

□ <「오죽장」 보유자 인정조사 여부 심의>

○ 000 과장

오죽장 보유자 인정조사 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경과를 한 번 보시면 1996년도에 윤병훈님께서 보유자로 지정이 되셨고 2017년도에 명예보유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참고로 네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2019년도 5차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는 보유자 공모 후에 신청자가 없을 때는 심층조사 후 해제를 검토해야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



것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신청자 공모를 진행했는데 그때 한 분이 접수를 하셨는데 그때 조사결과는 적격자 없음으로 2021년도에는 결과가 나왔고 이번에 2024년도에 들어서 저희가 다시 공모를 했는데 신청인은 최선희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 000 위원장

앞의 그 사람 아니에요?

○ 000 과장

예. 2021년도에 신청하셨던 그분인데, 심의해 주실 내용은 인정조사를 하지.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조사위원을 누구로 하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일단 2020년도에 조사를 해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결을 했는데 다시 신청한 거죠?

○ 000 과장

예. 같은 분이 신청한 겁니다. 서울시 거주 기간이 20년이 안 되지만, 10여 년을 윤병훈 보유자님 공방에 주소지를 옮겨두고 전수활동을 했기에 이전 조사에서도 그 부분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 000 위원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 000 위원

침선장도 간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가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000 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조사위원을 추천을 해야 하는데요. 공예 쪽에서 끝나고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그다음에 58쪽.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50호 「관모장」 보유자 인정조사 여부를 심의하겠습니다.

□ <「관모장」 보유자 인정조사 여부 심의>

○ 000 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경과를 보시면 2017년도에 보유자 박성호 님이 인정이 되었고 2020년도에 보유자께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를 한 결과 신청자는 총 두 분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분 현황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심의 요청사항은 인정조사 여부 결정과 조사위원 추천 부분이 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이것은 인정조사인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공예 쪽인데 조사위원을 같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57호 「백동장」 보유자 인정조사 여부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 <「백동장」 보유자 인정조사 여부 심의>

○ 000 과장

진행경과를 보시면 2023년도에 조성준 님께서 신청서를 제출했고 2023년 12월 12일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종목 지정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고기간이 끝났고 보유자 공모는 2024년 3월에 진행해서 총 신청자는 처음 신청인이었던 조성준 님께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금일 심의요청 내용은 인정조사 여부의 결정, 만약에 결정이 되면 조사위원을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이 부분도 조사위원을 위촉해서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64페이지,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55호 「불교지화장엄」 보유단체 인정조사 여부를 심의하겠습니다.

□ <「불교지화장엄」 보유단체 인정조사 여부 심의>

○ 000 과장

진행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3월에 불교지화장엄의 종목이 지정이 됐고 2024년 3월에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신청단체는 총 4개가 접수되었습니다. 아래 신청현황을 보시면 네모 박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조사 여부 결정과 조사위원의 추천 부분을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우리가 지난번에 단체종목으로 지정을 했는데 보유단체 공모를 이제서 했기 때문에, 지금 네 단체에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조사위원을 추천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화는 그때 우리가 지정할 때 단순한 공예가 아니고 의례와 공예를 겸한 예술종목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사위원 추천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별도로 관계되는 분들이 남아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예도 있고 의례도 있습니다. 의례 부분은 제가 남아서 하고 000 위원님께서도 남아서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게 있어서요. 우리 서울시는 현장조사를 갈 때 위원을 항상 빼지 않습니까. 청에서 빼는데 다른 시·도를 가서 보게 되면 사실 위원이 현장에 가기도 하거든요. 걱정이 뭐냐면 침선장이 걱정인 것이 지금 선생님이 가셔야 하는데 이번에 위원이라서 못 가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심의의 연속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서울시에서 위원을 현장에 보내지 않음으로써 장점이 많기도 하지만 단점을 들자면 위원회에 왔을 때 그것을 보고할 때 현장을 모르는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이것은 진짜 위원이 현장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점 하나하고요. 또 한 가지는 형평에 따라서 침선장처럼 지난번에 조사하신 분이 빠지면 모양이 안 맞



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혹시 위원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시·도는 전부 다 위원 한 분은 반드시 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규정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 000 주무관

규정 고시가 있습니다.

○ 000 위원

고시가 있고 예전에 한 번 그래서 참관을 한 적이 있어요.

○ 000 위원장

고시 내용이 됩니까?

○ 000 주무관

지정 및 보유자 인정조사를 할 때 조사단 구성하는 것에 우리 무형문화재 위원회는 그 전에는 위원과 전문위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산청에서 전문위원만 두고 위원은 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위원을 빼고 규정 고시를 준비했고,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000 위원장

옛날에는 우리 위원들이 조사를 나갔는데 지금은 조사를 안 나가요. 그런데 지금 000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관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 000 위원

아니요. 혹시 조사가 가능한 것인지. 침선장처럼 지난번에 조사하신 분이 못 가니까요.

○ 000 과장

그런데 고시가 되어 있으면 참관은 가능하시겠지만 조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실 수는 없는 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 000 위원장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4/K061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19/22



그런데 참관하는 것은 혹시 또…….

○ 000 과장

참관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참관은 가능하신 것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 000 위원장

참관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000 과장

그것은 참관에서 행위의 문제인 것이고 참관이 안 된다고 법적인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 000 위원장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은 없는데 가능하면 우리 위원들께서는 조사할 때는 참관을 안 하는 것이 조사위원들 입장에서는 편해요. 오히려 위원들이 나와 있으면 눈치 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되도록이면 참관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조사위원들에게 일임하고 그 대신 완벽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 조사위원들을 좋은 사람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남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 기능종목 보유자 미응모 종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에 대한 보고사항이 올라와 있는데, 우선 제안 설명 해 주세요.

■ **보고사항**

<기능종목 보유자 미응모 종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000 과장

저희가 그때 위원회 의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모를 진행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이번에 열두 가지 종목에 대한 공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다섯 개 분야는 신청자가 있었는데 표에서 보시면 일곱 개 분야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고민이 됐는데 그러면 신청자가 없는



분야는 별도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더 이상 무형문화재로서 유지가 필요한가. 이것을 조사를 해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래에 전승단절 종목 등 실태조사를 보시면 칠장 부분하고 필장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야가 조금 나누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누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나눌 필요가 있느냐. 칠장도 세부 종목이 있는데, 또 없는 분야도 있어서 과연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정책 실행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예. 검토를 해야 하는데,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사를 해봐서 있나 없나부터 알아야 하잖아요.

○ 000 과장

그렇죠. 과연 무형문화재로서 지정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이 됩니다.

○ 000 위원장

칠 전공하시는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 어떻습니까? 있습니까까 지금?

○ 000 위원

저번에도 한 번 했죠. 그래서 사실 홍순태 선생님이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다음 분이 하셨다가 신 선생님이 하셨는데, 그분도 돌아가셨죠.

○ 000 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검토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해야 하나요?

○ 000 과장

아니요. 이것은 별도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실태 조사를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예. 여기 주로 공예 부분인데 부위원장님께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존 여부, 있나 없나부터 기초조사를 해서 다음 회의 때 안건으로 올려주시면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의사항은 다 끝났고 기타사항이 있습니까?

○ 000 과장

기타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2024년 6월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

